

수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자

(경유)

제목 **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**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,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산 등을 고려,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**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: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 3단계)를 2주간 추가 연장**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3. 관내 특수판매업자에게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및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, **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**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주 요 내 용 >

- 지 역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- 대 상 :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
- 기 간 : 2021.8. 23.(월) 0시 ~ 2021. 9. 5.(일) 24시
- 내 용 : 거리두기 4단계, 방역지침 의무화
- 법적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

붙임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수칙 1부. 끝.



주무관 **이택선** 민생대책팀장 **대신희연** 공정경제담당관 08/20 **서병철**

협조자

시행 공정경제담당관-2211 (2021. 8. 20.) 접수 ()

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/ (서소문동)

전화 2133-5367 /전송 02-768-8852 / dlxortjs32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
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
<위험요인>

- ▲ 대화, 상품 설명 등은 **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**
- ▲ **춤**을 추거나 **노래**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**마스크**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
- ▲ 음식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
- ▲ 상대적으로 고령 이용자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곤란
- ▲ **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,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**
- ▲ 거리두기 및 환기가 어려운 취약한 시설(오피스텔, 지하 위치 등) 존재
- ▲ 불특정 다수, 불특정 장소에서 모이는 경우 **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**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시설 면적 6m ² 당 1명 인원 제한	▲ 시설 면적 8m ² 당 1명 인원 제한	▲ 시설 면적 8m ² 당 1명 인원 제한	▲ 시설 면적 8m ² 당 1명 인원 제한
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	▲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마스크 착용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음식물 제공 및 섭취, 공연,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음식물 섭취, 노래부르기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
	⑥ 손씻기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안내 	
	⑧ 환기하기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	
⑨ 소독하기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 1회 이상 소독 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		
⑧ 기타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		
추가수칙	① 시설 내 공용 장소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